

#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 푸르지오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10.25. 입니다.(청약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충청북도 청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므로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다목에 의거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24호다목에 의거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7조제1호에 의거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바목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 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원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나목(제2조제8호 관련)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 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수도권에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외 지역에서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r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산업단지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www.housing.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 및 제8항에 의거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본 주택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이때 다른 주택의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절사)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 제9항 및 제26조의2제6항에 의거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tp2.g-well.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60%는 [추첨제]로 공급하며,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가 적용됩니다.(청주시 공고 2016-2810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공동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국토교통부령 부칙 제5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의거한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은 한국주택협회에서 실시합니다. (단,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의거 공급유형별(특별공급, 일반공급) 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을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 주택전시관(tp2.g-well.co.kr)을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주택전시관 관람이 가능 합니다. 단,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주택전시관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실제 주택전시관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건축설계 도면은 주택전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의거 「**청주시 공동주택과-29392호(2019.10.2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 일원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A6BL)
- ▣ 대지면적 : 59,797.00㎡ 중 공동주택 59,023.6747㎡
-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1층, 지상29층 12개동 총 1,14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1. 공급대상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 식 표 기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	공급세대수						저층우선 배정세대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합계		계	특별공급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산업단지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민 영 주 택	2019000935-01	059.9721	59A	59.9721	19.0842	79.0563	32.9245	111.9808	39.8246	246	86	24	24	48	7	57	13
	2019000935-02	059.8893	59B	59.8893	19.4030	79.2923	32.8790	112.1713	39.7696	154	54	15	15	30	4	36	6
	2019000935-03	084.9664	84A	84.9664	25.9975	110.9639	46.6463	157.6102	56.4221	573	201	57	57	114	16	128	24
	2019000935-04	084.8235	84B	84.8235	25.8213	110.6448	46.5680	157.2128	56.3272	84	29	8	8	16	2	21	3
	2019000935-05	099.9702	99	99.9702	29.8618	129.8320	54.8834	184.7154	66.3854	91	32	-	9	-	2	48	4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소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구분(주택형)	59A	59B	84A	84B	99	합계		
산업단지 특별공급	86	54	201	29	32	402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8	5	15	2	-	3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3	12	2	-	21	
	중소기업 근로자	4	3	12	2	-	21	
	장애인	8	4	18	2	-	3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24	15	57	8	9	11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36	23	86	12	-	157
		일반공급(25%)	12	7	28	4	-	5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7	4	16	2	2	31	
합계	189	118	445	63	43	85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타입)	동호수	층별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2020.05.15.	2020.09.15.	2021.01.15.	2021.05.17.	2021.09.15.	2022.01.17.			
59A	101동 1호, 106동 3,4호, 107동 1,2,3,4호	2층	7	68,686,611	136,513,389	-	205,200,000	20,520,000	20,520,000	20,520,000	20,520,000	20,520,000	20,520,000	20,520,000	20,520,000	61,560,000	
	101동 1호, 106동 3,4호, 107동 1,2,3,4호, 108동 1호, 110동 3,4호, 111동 3,4호, 112동 1호	3층	13	69,389,544	137,910,456	-	207,300,000	20,730,000	20,730,000	20,730,000	20,730,000	20,730,000	20,730,000	20,730,000	20,730,000	20,730,000	62,190,000
		4층	13	70,862,356	140,837,644	-	211,700,000	21,170,000	21,170,000	21,170,000	21,170,000	21,170,000	21,170,000	21,170,000	21,170,000	21,170,000	63,510,000
		5~9층	65	72,301,695	143,698,305	-	216,0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21,600,000	64,800,000
		10~19층	130	72,669,898	144,430,102	-	217,100,000	21,710,000	21,710,000	21,710,000	21,710,000	21,710,000	21,710,000	21,710,000	21,710,000	21,710,000	65,130,000
101동 1호, 106동 3,4호, 108동 1호, 112동 1호	20층 이상	18	73,473,251	146,026,749	-	219,500,000	21,950,000	21,950,000	21,950,000	21,950,000	21,950,000	21,950,000	21,950,000	21,950,000	21,950,000	65,850,000	
59B	103동 3호, 108동 2호	1층	2	64,803,742	128,796,258	-	193,60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19,360,000	58,080,000	
	101동 2호, 103동 3호, 108동 2호, 109동 3호	2층	4	67,648,947	134,451,053	-	202,100,0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20,210,000	60,630,000	
	101동 2호, 103동 3호, 104동 3호, 108동 2호, 109동 3호, 112동 2호	3층	6	68,385,354	135,914,646	-	204,300,000	20,430,000	20,430,000	20,430,000	20,430,000	20,430,000	20,430,000	20,430,000	20,430,000	20,430,000	61,290,000
		4층	6	69,791,220	138,708,780	-	208,500,000	20,850,000	20,850,000	20,850,000	20,850,000	20,850,000	20,850,000	20,850,000	20,850,000	20,850,000	62,550,000
		5~9층	30	71,230,559	141,569,441	-	212,800,000	21,280,000	21,280,000	21,280,000	21,280,000	21,280,000	21,280,000	21,280,000	21,280,000	21,280,000	63,840,000
		10~19층	60	71,565,289	142,234,711	-	213,800,000	21,380,000	21,380,000	21,380,000	21,380,000	21,380,000	21,380,000	21,380,000	21,380,000	21,380,000	64,140,000
20층 이상	46	72,402,114	143,897,886	-	216,300,000	21,630,000	21,630,000	21,630,000	21,630,000	21,630,000	21,630,000	21,630,000	21,630,000	21,630,000	64,890,000		
84A	102동 2,3,4호, 103동 2호, 104동 2호, 105동 2,3,4호, 108동 3,4,5호, 110동 1호, 112동 5호	1층	13	90,511,011	179,888,989	-	270,400,000	27,040,000	27,040,000	27,040,000	27,040,000	27,040,000	27,040,000	27,040,000	27,040,000	27,040,000	81,120,000
	101동 3,4,5호, 102동 2,3,4호, 103동 2호, 104동 2호, 105동 2,3,4호, 106동 1,2호, 108동 3,4,5호, 109동 1,2호, 110동 1호, 112동 5호	2층	20	94,494,299	187,805,701	-	282,300,000	28,230,000	28,230,000	28,230,000	28,230,000	28,230,000	28,230,000	28,230,000	28,230,000	28,230,000	84,690,000
	101동 3,4,5호, 102동 2,3,4호, 103동 2호, 104동 2호, 105동 2,3,4호, 106동 1,2호, 108동 3,4,5호, 109동 1,2호, 110동 1,2호, 111동 1,2호, 112동 3,4,5호	3층	25	95,465,016	189,734,984	-	285,20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85,560,000
		4층	25	97,473,397	193,726,603	-	291,20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29,120,000	87,360,000
		5~9층	125	99,448,304	197,651,696	-	297,10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29,710,000	89,130,000
		10~19층	244	99,950,399	198,649,601	-	298,600,000	29,860,000	29,860,000	29,860,000	29,860,000	29,860,000	29,860,000	29,860,000	29,860,000	29,860,000	89,580,000
101동 3,4,5호, 102동 2,3,4호, 103동 2호, 104동 2호, 105동 2,3,4호, 108동 3,4,5호, 109동 1,2호, 112동 3,4,5호	20층 이상	121	101,088,481	200,911,519	-	302,0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90,600,000	

주택형 (타입)	동호수	층별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2020.05.15.	2020.09.15.	2021.01.15.	2021.05.17.	2021.09.15.	2022.01.17.		
84B	104동 4호	1층	1	91,080,052	181,019,948	-	272,10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27,210,000	81,630,000
	104동 4호, 109동 4호	2층	2	95,063,340	188,936,660	-	284,0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85,200,000
	103동 4호, 104동 4호, 109동 4호	3층	3	96,067,530	190,932,470	-	287,0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28,700,000	86,100,000
		4층	3	98,075,911	194,924,089	-	293,0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29,300,000	87,900,000
		5~9층	15	100,084,291	198,915,709	-	299,0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89,700,000
		10~19층	30	100,586,386	199,913,614	-	300,500,000	30,050,000	30,050,000	30,050,000	30,050,000	30,050,000	30,050,000	30,050,000	30,050,000	90,150,000
		20층이상	30	101,724,469	202,175,531	-	303,900,000	30,390,000	30,390,000	30,390,000	30,390,000	30,390,000	30,390,000	30,390,000	30,390,000	91,170,000
99	102동 1호, 103동 1호, 104동 1호, 105동 1호	1층	4	100,840,178	200,418,020	20,041,802	321,300,000	32,130,000	32,130,000	32,130,000	32,130,000	32,130,000	32,130,000	32,130,000	32,130,000	96,390,000
		2층	4	105,265,469	209,213,210	20,921,321	335,400,000	33,540,000	33,540,000	33,540,000	33,540,000	33,540,000	33,540,000	33,540,000	33,540,000	100,620,000
		3층	4	106,363,949	211,396,410	21,139,641	338,900,000	33,890,000	33,890,000	33,890,000	33,890,000	33,890,000	33,890,000	33,890,000	33,890,000	101,670,000
		4층	4	108,592,291	215,825,190	21,582,519	346,0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34,600,000	103,800,000
		5~9층	20	110,820,633	220,253,970	22,025,397	353,100,000	35,310,000	35,310,000	35,310,000	35,310,000	35,310,000	35,310,000	35,310,000	35,310,000	105,930,000
		10~19층	40	111,354,171	221,314,390	22,131,439	354,80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35,480,000	106,440,000
		20층이상	15	112,640,965	223,871,850	22,387,185	358,90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35,890,000	107,670,000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 및 청약시 주택형(㎡)	059.9721	059.8893	084.9664	084.8235	099.9702
약식표기	59A	59B	84A	84B	99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공통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의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제1항에 의거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청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책정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중문, 가전 등]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옵션 선택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포함)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지적정리, 진입로(가감속차로), 기부채납 등의 결과에 따른 공부정리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에는 공휴일이 포함되어 산정되므로 납부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제3호에 의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제4항제4호에 의거 사용검사일 이후,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최고층이 상이 하오니 반드시 동·호수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안내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분양계약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의거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만일 소명을 다하지 못 하여 당첨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여,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바랍니다.

1. 특별공급 [산업단지 종사자 /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군인·중소기업근로자 등)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p>자격요건 / 자격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p>무주택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 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예비 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 취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p>청약자격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제35조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는 제외합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노부모부양은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노부모부양은 1순위자)</li> </ul> </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공화국,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장애인 등 제외(청약통장 구비 불필요)</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에 의거 1순위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청약통장 구비 불필요)</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 제9조제3항 관련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구 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청주시, 세종시, 충청북도)</th> <th style="width: 25%;">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 style="width: 25%;">그 밖의 광역시(대전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청주시, 세종시, 충청북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전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청주시, 세종시, 충청북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전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산업단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 : 402세대(공급세대수의 50% 이내)**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의거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 대상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단, 특별공급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해당 산업단지(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일반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3일반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청원옥산일반산업단지, 청원내수농공단지, 청원현도지방산업단지, 청원현도농공단지,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가 속한 청주시(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일반산업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창3일반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 청원옥산일반산업단지, 청원내수농공단지, 청원현도지방산업단지, 청원현도농공단지,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 주택소유 판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판단합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제1항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합니다.
    - ① [입주(예정)기업]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 ② [연구소]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여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 ③ [의료기관]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예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종사자
    - ④ [교육기관]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예정)하여 「유아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제2항에 의거 상기 산업단지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산업단지가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산업단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
  - 산업단지/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기업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을 위한 인터넷 청약은 한국주택협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해 사전에 은행/보험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산업단지 종사자) 신청방법**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접속(www.housing.or.kr)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apt2.housing.or.kr)" 바로가기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청약신청 선택 → 사업명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서약서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청약신청완료

※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 신청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한국주택협회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의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 불법전매로 계약이 취소된 자 또는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2019.08.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재공급하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104세대(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을 말합니다.(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 청약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제2호에 의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및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113세대(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주택건설지역) 또는 기타지역에 거주하며,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임신 또는 입양부부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여부 또는 입양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임신상태 지속시 임신진단서등)를 제출하여야 함.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전 파양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됨)
- ※ 청약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제2호에 의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	-	-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됩니다.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될 경우 본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됩니다.(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208세대(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의거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주택건설지역) 또는 기타지역에 거주하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9조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임신 또는 입양부부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여부 또는 입양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자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임신상태 지속시 임신진단서등)를 제출하여야 함.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전 파양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됨)
- 소득기준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9조에 의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청약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제2호에 의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2018-784호, 2018.12.11. 시행)에 의거,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 ※ 재혼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제1,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청주시(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 재혼의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통계청)

공급유형		구 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 ~ 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 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 (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N-8)} : N은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또한,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이 불규칙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합니다.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 (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31세대(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의거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주택건설지역) 또는 기타지역에 거주하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를 말한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한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청약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제2호에 의거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청주시(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의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청약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 및 당첨자선정 일정**

구분		일자	시간	장소	
특별공급 신청	산업단지 종사자	신청	2019년 10월 30일	08:00~17:30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apt2housing.or.kr)
		신청	2019년 10월 31일		
	당첨자선정	2019년 11월 08일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신청	2019년 10월 31일	08:00~17:30	
당첨자선정		2019년 11월 08일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외 지역에서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일반공급

### ▣ 신청자격

구분	거주구분	순위	신청자격
민영주택	청주시/ 기타지역	제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형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 적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제3호 및 청주시 공고 2016-2810호)</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100% 추첨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li> </ul> </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li> <li>-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의 청약예금 청약예치금액 기준 이상인 자</li> <li>-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기준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지역별 청약예치금액 기준 이상인 자</li> </ul> </li> </ul>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          ※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p>
		제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li> </ul>

구분	내용																				
청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주택건설지역)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단,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청주시(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li> <li>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호에 의거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분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모든 청약을 무효처리합니다.</li> <li>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li> <li>-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청약예금 예치금액 차액 충족(증액)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li> <li>-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 제9조제3항 관련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청주시, 세종시, 충청북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대전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청주시, 세종시, 충청북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전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청주시, 세종시, 충청북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대전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제2조제8호 관련)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li> <li>•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단,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 제외)</li> </ul> </li> <li>•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li> </ul>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li> <li>•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단,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li> <li>•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ul> </li> </ul>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금액·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li> </ul>
④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li> </ul>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제2조제8호 관련)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서류등
①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ul>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li> </ul>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9세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 - 만19세이상~만30세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 자동 계산)</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배정

구분	선정방법
<p>산업단지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며, 입주대상자 모집결과 경쟁이 있을시 추첨을 통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li> <li>•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한 차례에 한정합니다.</li> </ul>
<p>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제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제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배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제2항제3호 및 제9항)</li> <li>• 주택형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 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7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 적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제3호 및 청주시 공고 2016-2810호)</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100% 추첨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li> </ul> </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제1순위 전체(기타지역 포함)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가점이 높은 자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주택형별 제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제2항, 제3항)</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li> </ul>

구분	선정방법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제57조 제1항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85㎡ 이하 주택형은 3년, 85㎡ 초과 주택형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재당첨이 제한됩니다.</li> <li>•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제57조 제1항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제1항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별표3)에 의거 본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li> <li>• 본 공동주택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주택전시관)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접수(주택전시관)시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주택전시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중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세대가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지위를 인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li> </ul>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 공급	산업단지 특별공급	2019.10.30.(수) (한국주택협회 08:00~17:30) 2019.10.31.(목) (한국주택협회 08:00~15:00)	인터넷 청약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apt2.housing.or.kr)</li> </ul>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2019.10.31.(목) (아파트투유 : 08:00~17:30) (주택전시관 : 10:00~14:00)	인터넷 청약 신청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정보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li> <li>사업주체 주택전시관(정보취약계층)</li> </ul>
일반 공급	1순위	2019.11.01.(금) 08:00~17:30 (개별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09:00~16:00)	인터넷 청약 신청 (PC 또는 스마트폰) 개별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정보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www.apt2you.com)</li> <li>- 스마트폰 : 아파트투유 어플리케이션</li> </ul> </li> <li>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www.kbstar.com)</li> <li>-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어플리케이션</li> </ul> </li> <li>개별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정보취약계층)</li> </ul>
	2순위	2019.11.04.(월) 08:00~17:30 (개별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09:00~16:00)		

※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에 의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3항에 의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등에 한하여 개별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접수가 허용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투유 접수마감시간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은행,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본인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 비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아파트투유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인감증명서 제출자 : 인감도장 지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 : 자필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주소 변동사항/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주소 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요망)
	○		청약통장 가입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 아파트투유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산업단지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확인서	본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서식1의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제출
	○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본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서식1의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제출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장애인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확인원(관리명단)으로 접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주소 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로 인정)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 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출산예정일 및 의료기관의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에 한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상세)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 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소득입증서류)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비치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해당자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비치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주소 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주민등록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주소 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직계비속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서명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자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or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or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or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or 월별급여명세서(직인날인) or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①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비치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_국민은행 제외)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
<p><b>[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b>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b>[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b>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b>[일반공급 PC 청약시]</b>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b>[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b>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li>※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li> </ul>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IV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구분	신청 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예비순번 발표	사전서류 제출
특별공급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9.11.08.(금)</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apt2.housing.or.kr)</li> <li>※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11.11.(월)~2019.11.15.(금) 10:00~16:00 (5일간)</li> </ul> </li> <li>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 푸르지오 주택전시관</li> </ul>
특별공급	기관추천 / 다자녀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9.11.08.(금)</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개별조회</li> <li>※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주택협회(산단특공) 및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19.11.08.(금) ~ 2019.11.17.(일)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아파트투유 어플리케이션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li>한국주택협회 인터넷청약시스템(apt2.housing.or.kr)접속 → 당첨자 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li> </ul>
전화(ARS)	서비스 종료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서비스코드 : 9→1→3)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특별공급 제외)
	제공일시	2019.11.08.(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별도 서비스 제공

※ 금융결제원 ARS(국번없이 1369)서비스는 2017.6.15.자로 종료되었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일정

구분	신청 대상자	계약기간	계약장소
특별공급	산업단지 / 기관추천 / 다자녀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li> <li>- 2019.11.19.(화) ~ 2019.11.21.(목) 10:00~16: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소</li> <li>-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 푸르지오 주택전시관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4</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종료 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아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무효로 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상기 분양대금 납부 지정계좌로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금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입금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301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함)
- 당첨된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403-81816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 상기 계좌는 향후 중도금대출 은행이 우리은행 외 타 은행으로 선정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 공동주택 계약용) 1통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포함) 및 주민등록표초본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대리계약 시(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위임장(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인감도장(계약자 및 대리인 각각), 인감증명서(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 1통,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인 인장
특별공급	○		•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특별공급 대상자가 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 입증,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시)
	○		• 혼인관계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일반공급		○	• 임신증명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1부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위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 위임장
	○		• 위임인 신분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지정한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여야 합니다. (현장수납 불가)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조건

- 사업주체가 본 공동주택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분양계약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사업주체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단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청약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분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주민등록법령 위반(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나, 당첨이 된 후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가 부활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본 주택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이때 다른 주택의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이며,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사업주체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준합니다.

##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완납 이후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고, 금융기관도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및 금융권 사정, 법률의 변경 등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가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신용불량, 한도초과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분양금 납부계좌에 현금(계좌이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 부과)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공급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 불가)
- 중도금 대출 무이자 기간 : 입주지정일 전일까지 중도금 대출이자 는 사업주체가 대납, 입주지정일(당일 포함)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별도의 승계없이 계약자가 은행에 직접 납부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 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 이외의 타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금융대출(혹은 기타 이와 유사한 대출)을 통해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금융비용(중도금 대출 이자 및 제반비용등)은 계약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외국인, 재외동포, 미성년자 또는 법인인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대출관련 확인 후 청약,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권 전매 및 권리양도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제57조제1항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제1항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별표3)에 의거 본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전 분양권 권리양도는 가능하나,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이행 및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물건 취득 인정 시 (분양대금의 90% 이상 납부한 경우) 권리양도(전매)는 불가능합니다.

**VI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마이너스 옵션 계약**

**(1) 공통**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본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타일바닥, 현관디딤판 등 일체),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및 재료분리대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 / 세탁실 바닥방수, 발코니 우수 선홈통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비닐시트 및 벽패널류 등),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벽체도장, 신발장, 화장대(상판 및 거울포함),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선반포함), 반침장, 재료분리대(욕실포함), 팬트리, 불박이장, 수납선반 및 가구	콘크리트 벽체 바탕처리 또는 기타부위 석고보드 마감, 월패드, 일괄소등스위치, 스마트스위치, 스위치, 콘센트,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천정	천정지(초배지 포함), 등박스, 반자동림(몰딩), 우물천정, 발코니천정도장, 전동빨래건조대	천정틀 위 석고보드 마감, 천정시설물 마감(스프링클러, 감지기, 환기용 디퓨저 등)
조명기구	부착/거치형 조명등기구(간접등포함), 욕실매입등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매입등기구(욕실제외)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 수전류, 액세서리일체, 천정재(천정틀 포함), 재료분리대,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 배기팬, 욕실 바닥 및 벽타일, 욕실폰	액체방수 및 구체 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스위치, 콘센트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 주방가전 일체(가스쿡탑, 렌지후드, 절수기일체형 싱크수전 등)	설비배관
문	목재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발코니내부 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기타	발코니 수전	월패드,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주택전시관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주택형)	59A	59B	84A	84B	99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금액	19,865,000	20,148,000	27,735,000	27,832,000	33,360,000

※ 전용 85㎡ 이하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금액으로 합니다.

※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별도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4) 마이너스 옵션 계약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최초 입주가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호를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시 소방관련시설물(자동식 소화기 등)을 사업주체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미준공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최초입주가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계약

###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주택형)	59A	59B	84A	84B	99
발코니 확장 공사비	11,500,000	10,500,000	14,000,000	14,500,000	17,5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확장면적 및 확장 시 제공되는 가구 등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세대(비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세한 확장 부위 및 방위치 등은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확장면적 및 확장 시 제공되는 가구 등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703-81541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수납계좌와 상이 하오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계좌로 납부한 금액만 발코니 확장 공사비로 인정하오니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공사비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상기 지정계좌로 무통장입금 후, 입금증을 주택전시관 제출 납부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발코니 확장 계약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아파트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으로서 계약자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 부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일정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공급안내문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 별도의 행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감안하여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타입별로 마감적용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주동 조합의 형태에 따른 인접 세대 간의 벽체 및 단열재의 위치가 상이하며, 이로 인하여 동일 유형세대에도 발코니의 유효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하였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유상옵션 계약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도의 계약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유상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상옵션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유상옵션과 관련하여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도산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금액은 기본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하며, 설치 위치는 계약자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사업주체 분양 홈페이지 또는 주택전시관에 전시되오니 필히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표기(안방, 침실1, 침실2 등)는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 에어컨(천정형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옵션선택	에어컨 설치 위치	금액	제조사	비고
59A·B	선택 1	거실 + 침실1	3,400,000	삼성전자	계약일정 별도 공지 예정
	선택 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000,000		
84A·B	선택 1	거실 + 침실1	3,600,000		
	선택 2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6,400,000		
99	선택 1	거실 + 주방 + 침실1	4,650,000		
	선택 2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 침실4	7,900,000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기본(거실+침실1)만 매립형 냉매배관이 설치되며, 작은방(타입별 침실2,3,4)실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2개소)인 매립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 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각 옵션 타입별로 냉매배관이 설치되며, 선택하지 않은 실에 대해서는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일부를 제외하거나 추가하여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명은 추가 선택품목 계약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지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내기의 위치는 입주자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으며, 일부 실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천정에 설치되는 마감재의 위치는 일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2) 빌트인가전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 안	제조사	상품명(모델명)	금액	비고
전평형	하이브리드 쿨탑	LG전자	BEY3GTBI	650,000	
59A	비스포크(냉장고+김치냉장고)	삼성전자	키친핏4도어+키친핏김치냉장고	4,930,000	
59B	비스포크(냉장고+김치냉장고)+키친장	삼성전자	키친핏4도어+키친핏김치냉장고+키친장	5,730,000	
84A,B / 99	스타일러	LG전자	S3DFB	1,500,000	
84A,B / 99	김치냉장고 + 키친장	삼성전자	RQ22K5R01EC+키친장	2,500,000	

**(3) 현관중문 & 침실 슬라이딩도어**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옵션금액	비고
59A,B/84A/99	현관중문 (슬라이딩)	1,200,000	-
59A	드레스룸 슬라이딩도어	1,100,000	-
84B	현관중문 (여닫이)	1,000,000	-
99	침실4 슬라이딩유리도어	1,500,000	-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99타입 침실4의 슬라이딩 유리도어 미 선택시 막힌 경량벽체 및 목도어가 설치되며, 전등스위치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됩니다.

**(4) 가구**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옵션금액	비고
59A,B	팬트리장	750,000	-

**(5) 미세먼지방충망 & 안전방충망**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옵션금액	비고
미세먼지저감 방충망	59A,B	4,000,000	숨쉬는 하우스
	84,A,B	4,500,000	
	99	5,000,000	
안전방충망	59	1,500,000	고구려
	84	1,700,000	
	99	2,400,000	

**(6) 추가 유상옵션**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 옵션(유상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703-81541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 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주택소유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중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시 적용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 일부터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일반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의 구조변경(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본 공동주택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광역도로 및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당해지구 내 학생배치계획은 개발계획의 변경, 학생수용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동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함.

## ▣ 설계 및 시공관련 유의사항

### (1)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합니다.
- 준공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지연, 세대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공동주택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 설계 및 시공관련 변경사항

- 본 공동주택은 구조/성능/마감/상품/디자인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줄눈,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난간, 단지 시설물 등이 분양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는 로고의 개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및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사항)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최종 사용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드시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 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충고,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재질, 높이 등)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기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 기관 주관사항으로 사업주체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및 식재의 위치는 단지의 조화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현장시공 여건 등에 따라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등이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일부 동/세대에서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는 이사 시 차량 접근 동선, 주동의 위치 및 단위세대 창호크기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형 이삿짐 및 중량물의 운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단지 내 단위세대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외관디자인(재료, 입면, 벽체마감 등) 및 외부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는 시공 상의 문제나 인허가과정, 허가권자 경관자문결과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단지내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용 CG, 주택전시관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엘리베이터홀은 결로 저감을 위한 장비(제습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 될 예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발코니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체 (침실,욕실,PD 등의 부분)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구조개선등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모형,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 크기 및 위치,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 한 것이므로 계약 전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현장방문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기재된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사용한 각종 홍보용 자료 및 CG, 일러스트 등은 예비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상이하므로 청약 및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계약자

용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단위세대 및 단지외관, 사업구역 내 각종 시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주택전시관(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상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상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기구의 수량 및 배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4) 주택전시관

-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주택에 시공되는 제품은 자재품질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D.A,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거나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발코니 상호, 현관 방화문, 가구, 마루, 알루미늄 슬라이딩 도어 등은 본공사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바닥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의 내용 및 사양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주택전시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과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내·외관, 색채, 조경, 기타 시설물의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주택전시관용 소방시설임)

- 스프링클러는 주택전시관 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단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전시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분양가 포함 품목만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마감 및 집기류(테이블, 의자, 인테리어소품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디스플레이용으로 본 공사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조경시설물/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택전시관 미건립세대에 대하여서는 주택전시관 건립세대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세대 모형 및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전시관 내 발코니 등에는 상층에서 내려오는 우수 배관이 본공사시 설치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포트조명은 전시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되는 세대 난간의 개폐기능은 주택전시관 피난을 위한 동선입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마감자재(시트, 인조석 등)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판단합니다.

#### (5) 명칭

- 단지 및 단지내 명칭, 외벽로고사인,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6) 외부시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와 단지 외부와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인접대지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측경계를 따라 옹벽, 조경석 등이 설치됨)
- 지상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의 위치 및 사양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은 지형적인 요건으로 인접 동과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 주동,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외부 마감은 디자인 개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재질, 높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조경시설물의 경우 주택전시관 모형 및 분양 카탈로그 상에 표현된 것은 참고 이미지이며, 허가권자의 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팬룸, 제연팬룸 등의 급배기구), 상가 등의 단지시설물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사 현장여건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입주자의 개인 및 단체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구조 형식상 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대린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예비소음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되어 일조권/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경비실 및 문주, 그밖의 조경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경우 시야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지하주차장의 단지 내 입구 위치에 따라 일부 동/세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주변도로 인접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옥외운동시설에서 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주택전시관의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청약,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시설(훤룸, D.A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인접 주동/세대의 경우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쓰레기보관소위치에 면하는 동/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보관소는 총 14개소(공동주택12개, 근린생활시설2개)로 인접한 세대에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각 동의 위치에 따라 거리에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장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동/세대는 단지 출입구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출입구, 차량 출입구,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에 인접한 동/세대는 소음 및 분진 피해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 110동, 111동, 112동 전면 / 부대복리시설 : 103동 하부 / 펌프실, 저수조 : 109동 하부 / 주차장 램프 : 101동, 107동 전면 / 어린이집, 경로당 : 109동, 112동 전면 / 어린이놀이터 : 103동 전면, 102동,102동 후면, 106동,108동 전면, 107동 후면 / 기타시설은 배치도 참고
- 103동, 104동 사이에 풋살장(선큰)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동/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주택전시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반드시 사전에 확인바랍니다.
- 단지내 보안 및 보행자/차량 안전을 위해 보안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민원제기 및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인접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시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세대가 속한 동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의 벽, 바닥, 천정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 용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관람을 통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 색상 및 패턴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 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사업주체가 임의조정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새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실제 사용가능한 발코니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우·오수 드레인, 선홍통 등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발코니에 수전,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설치 개소와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는 분양면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발코니는 본 공사시 세부 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타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도어로 시공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적용되며 보일러의 배기구는 동 외벽에 설치됩니다.
- 주동의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가구장 일부를 사용하여 가구장 내부 공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배관의 위치, 형태,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주방배기는 직배기 방식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냄새 및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막다른 도로 형태로 회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천정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주택전시관 시공자재와 상이할 수 있음)
- 창호 등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에는 난방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가구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앞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층 교차 시공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에 따른 소음 등이 생길 수 있으며 1층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보일러와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정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의 형태(평면, 외관)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욕실가구, 거울 후면 등에는 마감이 시공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의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내부마감 석재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식탁위치에 정하였으며, 계약자 요구로 인한 위치이동은 불가합니다.
- 안목치수는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두께차이로 인해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59B타입의 거실 측면 창호(비채광창)는 동일타입이더라도 101,103,104,109동만 설치되므로,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도서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9B타입의 발코니2의 창호는 비채광창으로 창호 면적이 0.5㎡이하로 시공되며, 다른 타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2 외부창호 쪽에 가전을 배치할 경우 창호개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통합형 실외기실 도어의 경우 개폐시 실외기와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03동 3,4호, 104동 3,4호, 106동, 107동, 108동 1,2호, 109동, 110동, 111동, 112동의 경우 지상층에서 주동 출입방식은 필로티형으로 설치되오니, 주택전시관 내 전시모형 및 사업 승인 도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필로티의 높이는 동별로 상이하오니 주택전시관 내 모형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동 필로티 내에는 제연 환풍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필로티에 입주인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는 필로티를 이용하는 입주인으로 인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등 생활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주동 내에서 층수가 차이나는 경우,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외기에 면한 세대는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인접세대는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전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덕트/PIT 공간은 임의로 벽체를 철거하여 불법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가칭)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난방,환기,가스밸브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KT,LGU+,SKT)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oT 가전 연동은 이동통신사의 App을 통해 구현되므로,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합니다.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정,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 시공, 붙박이장 및 주방가구 천정/후면/측면 마감재 미 시공 등)
- 본 공사 시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디자인, 설치 간격, 구조체 및 하드웨어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주택전시관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호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쿡탑 주변 주방 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디딤판, 화장대 등에 사용되는 인조석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패턴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제조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조명기구,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 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정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재 시 피난 공간(관련규정에 근거)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는 주방 싱크대 하부 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 및 마루마감재는 제공되는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시공되며, 계약자의 개별 선호도에 따른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 (비확장) 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일부 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욕상에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가 설치되며, 최상층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와 근접해 있어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주택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형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과 인접한 발코니의 경우 창호 유무에 따라 환기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풍압검토 결과에 따라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제조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보조주방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외기 가동으로 인해 발생된 결로가 바닥에 고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정에 전열교환 환기유닛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정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상층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한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측면 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한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벽체에 단열재가 부착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유효천정과, 유효실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샷시는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실외기실의 창호 프레임은 외관디자인을 위해 세대별로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각 실, 실외기실, 대피소 등 외부창호, 그릴, 출입문 등은 계약 미포함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실(하향식피난구)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선택 시 플러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저층부(2~3층 이하) 및 필로티 내부공간은 석재, 석재뿔칠, 수성페인트 등을 혼용하여 시공하며, 고층부는 수성페인트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다용도실 천정 설치로 유효 천정고가 주택전시관보다 낮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9)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공용시설**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 및 선큰 공간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공간만 제공되며,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피트니스클럽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임의의 공간에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PD, EPS TPS실 등 내측 벽체 및 바닥은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 내부 마감재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주차계획 구분은 입주 후 관리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트렌치는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은 별도의 구배 계획이 없으므로 일부 부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1,503대, 근린생활시설 17대이며,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향후 관련법 개정 및 개인/단체에 의한 추가요구가 불가능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실내 및 실외, 지붕 등에 설치)로 인해 인접 동/세대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남동측 출입구변 12대, 남서측 출입구변 5대)은 근린생활시설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주차장의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시 일부 동선이 중복되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가용 실외기실 공간에는 실외기 설치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동/세대의 경우 불편을 느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출입구 이외에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각 동간의 거리에 따라서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고, 주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등 단지내 공용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동으로부터의 접근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에 의거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야간조명으로 인한 세대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체(식당, 관람집회시설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주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차량통행구간 유효 높이 2.7m, 주차공간 천정고 2.1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에 경비실, 통합형 문주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형태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층에서 주동 출입방식은 필로티형, 동출입구형, 필로티+동출입구혼합형으로 설치되며, 각 동별 규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정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전면에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의 높이 2.7m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소유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시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 기계전기 설비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세대 내에 개별보일러가 설치되는 바닥 난방 방식입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는 세대 내 싱크장 하부, 신발장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비확장세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은 실(거실, 침실1 제외)에는 선풍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추후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허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월패드는 성능개선으로 제품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정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붕층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실은 중앙배기 방식으로 옥상의 무동력 팬은 설치됩니다.
- 이동통신용 안테나는 101, 103, 108, 109, 112동 옥상층, 중계장치는 101, 108, 112동 헬룸, 101, 103, 108, 109, 112동 옥상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측정 후 설치위치가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11)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및 단지 외부여건 관련 사항

- 당 사업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지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현황은 현재 계획을 반영 하여 표현하였으며, 향후에도 도시개발사업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가 속한 청주테크노폴리스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관련한 각종 평가(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구역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 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근린공원, 공공공지, 학교, 하천, 광장 및 각종시설 등은 미확정 상태로 토지이용계획, 실시계획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CG 및 모형 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된 것입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구내 유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주택전시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상업시설 등)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지구 내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전기, 난방시설, 기타처리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 위탁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주체와는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접한 도로에 대하여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교통영향평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등 인허가에 따라 출입구 인접하여 교차로가 신설되거나 출입구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청주테크노폴리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위험물처리시설, 주차장 부지가 단지 동측에 인접해 있으므로 계약 전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홍보용 모형, 상담 등을 통해 위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02동 동측에 인접한 위험물처리시설 부지와 주동간의 거리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5m 이상 이격되어 있음.)
- 당 사업지 인근에 청주공항 및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관련 소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 청주내곡초 배치 불가, 인근학교 배치(협의조건 반영)
  - 중 학 생 : 청주시 제2중학교군 내 분산배치

- 고등학생 : 청주시 및 도내 전체 고등학교에 지원 분산 배치

- 현재 학구인 청주내곡초등학교에 학생배치가 불가능하며,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설정된 초등학교용지 3개소 중 1개소 학교설립 시까지 인근 학교(새터초, 운천초 중 1교)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입학생 전체가 임시배치될 예정이며, 임시배치 대상교는 추후 청주교육지원청과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될 예정입니다.

## (12) 기타

- 본 공동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추후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각 동의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타사 또는 사업주체 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각 동 옥상에는 통신장비(TV공청 안테나, FM, 디지털 안테나, 위성안테나 등)가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상층 및 옥탑층에 구조물,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중계장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및 피뢰설비,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바람에 의한 소음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차량도로와 인접한 주동에는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북측 근생과 인접한 주동(102~106동)에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시어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형의 단위세대라 하더라도 측벽이 외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므로 해당세대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9동 하부(지하층)에 기계실 및 저수조, 103동, 104동 사이 하부(지하층)에 전기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주변도로와 레벨차이가 있으므로 일부 보행출입구는 계단, 경사로 등을 통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계약전 단지 보행출입구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주변도로와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A/C실외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피난공간(하향식피난구)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행사 및 시공사는 일절 책임이 없습니다.
-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식재계획으로 인해 세대내 음영이 생길 수 있으며, 벌레 및 곤충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보행자 및 차량 안전을 위해 단지내 교차로에는 반사경 등이 부착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시공회사 및 연대보증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1호에 의거 사업주체, 시공회사, 연대보증인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주)신영테크노6피에프브이	(주)신영	(주)대우건설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240번길 27, 2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14층 1401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70, 에이동(을지로4가, 씨밋타워)
법인등록번호	150111-0272570	110111-0618178	110111-2137895

**▣ 감리자 및 감리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호에 의거 감리자 및 감리금액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 감리
회사명	계림건축	IB엔지니어링	선엔지니어링
감리금액	2,696,866,700	610,071,000	649,000,000

**▣ 자금관리업무위탁 관련사항**

※ 본 공동주택은 “자금관리업무위탁자” (주)신영테크노6피에프브이와 “자금관리업무수탁자” (주)무궁화신탁이 2019년 8월 1일(이후 체결한 변경계약 포함)자로 체결한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 내용에 따라 분양대금이 관리됩니다.

- ① 분양대금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된 지정 분양대금 계좌외의 입금에 대하여는 입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② “자금관리업무수탁자” (주)무궁화신탁은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합니다.
- ③ 분양대금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책임은 사업주체인 (주)신영테크노6피에프브이에 있고, (주)무궁화신탁은 자금관리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반환 업무에 협조할 뿐 분양대금 반환책임이 면책 되는 바, 계약자는 (주)무궁화신탁에 분양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이를 청구하거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④ 사업주체가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⑤ 본 공동주택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공사비, 대출금의 상환, 기타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 필수사업비 등 분양목적물의 신추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주)신영테크노6피에프브이와 (주)무궁화신탁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⑥ “자금관리업무수탁자” (주)무궁화신탁은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 ⑦ 사업주체는 분양대금이 수납되지 않고 분양계약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본 사업의 시공사, 대출금융기관, 보증기관, 신탁사 등의 관계된 자(법인)로부터 사전서면동의를 거쳐야하며, 동의 없이 발행한 분양계약서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2년 05월중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자사전방문일 등 사업주체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출입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여 생기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1, 실내체육관1), 다목적홀, 맘스카페,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

##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17호에 의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6812019-101-0000700 호	221,740,33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공동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애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약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보증회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③ 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 성능 / 설치위치 /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방습층 설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설계용 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개별보일러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 펌프 등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간선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에 따름
	조명설치(다목)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세대 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공용화장실 내 재실감지센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인증서 사본은 본 입주자모집공고 최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제5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제15조제1항 관련)에 의거한 항목별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대항목			세분류	금액	대항목			세분류	금액
1. 택지비(4)			택지공급가격	58,920,359,176원	2. 건축비(58)	공사비(51)	건축(23)	유리공사	2,508,735,164원
			기간이자	1,510,031,945원				타일공사	6,827,662,882원
			필요적 경비	3,088,726,019원				돌공사	5,780,392,413원
			그 밖의 비용	1,434,786,240원				도장공사	1,679,140,194원
2. 건축비(58)	토목(13)	토공사	1,480,249,448원	도배공사				980,060,975원	
		흙막이공사	0원	수장공사				6,009,799,268원	
		비탈면보호공사	0원	주방용구공사				1,458,302,003원	
		옹벽공사	0원	잡공사				1,686,280,178원	
		석축공사	0원	급수설비공사				1,777,305,566원	
		우오수공사	949,035,600원	급탕설비공사			1,276,014,252원		
		공동구공사	0원	오배수설비공사			3,438,762,709원		
		지하저수조및 급수공사	381,733,335원	위생기구설비공사			3,378,019,873원		
		도로포장공사	950,174,899원	난방설비공사			1,661,097,125원		
		교통 안전시설물 공사	792,951,714원	가스설비공사			1,023,690,409원		
		정화조시설공사	0원	자동제어설비공사			573,067,115원		
		조경공사	7,427,641,366원	특수설비공사			632,310,634원		
		부대시설공사	2,734,940,590원	공조설비공사			0원		
	건축(23)	공통가설공사	7,769,941,303원	전기설비공사			16,968,623,848원		
		가시설물공사	4,164,387,581원	정보통신공사			10,415,746,602원		
		지정 및 기초공사	2,057,324,615원	소방설비공사			9,250,270,502원		
		철골공사	0원	승강기공사			0원		
		철근콘크리트공사	54,305,106,725원	그 밖의 공사비(2)			일반관리비	4,800,591,198원	
		용접공사	0원	이윤			4,991,734,715원		
		조적공사	4,116,032,338원	간접비(6)	설계비	2,660,000,000원			
		미장공사	4,229,991,803원		감리비	3,955,937,700원			
		단열공사	3,326,980,442원		일반분양시설경비	7,092,149,238원			
		방수·방습공사	1,784,478,589원		분담금 및 부담금	4,063,735,000원			
		목공사	2,652,263,981원		보상비	0원			
		가구공사	5,560,915,683원		기타사업비성 경비	21,234,683,531원			
금속공사	1,922,421,426원	그 밖의 비용 (1)	9,977,967,630원						
지붕 및 흙통공사	586,738,696원	합 계	313,241,700,000						
창호공사	4,992,405,762원								

☐ 사이버 주택전시관 : tp2.g-well.co.kr

☐ 주택전시관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외북동 324

☐ 분양문의 : 043)233-42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